

## 화재보험 우량물건 할인제도

화재보험 우량물건 할인제도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93. 5. 1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화재보험 계약부터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할인율 산출규정의 내용, 업무처리 절차 등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현재의 화재보험 요율체계는 위험평가 요인이 단순히 건물구조와 작업공정에 한정되어 있어, 보험가격 측면에서 적정 위험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실제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과학화된 보험요율의 도입이 필요하다.

### 1. 개요

현행의 화재보험 요율은 등급요율로서 고도 산업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각종 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20억원 이상의 고액 공장물건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손해실적과 국내의 화재위험 정도 및 위험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그 성적에 따라 화재보험 요율을 최저 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하는 제도이다.

외국의 유사한 제도로는 미국의 HPR(Highly Protected Risks)과 일본의 특정할인제도가 있다.

### 2. 도입 배경

#### 가. 위험도에 따른 적정요율 산출

공장의 경우에는 위험형태가 복잡하고 위험특성이 개별화되어 있으며, 방재설비 및 위험관리 상태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 나. 국문요율 사용 확대

우리나라 화재보험 요율은 국문요율과 영문요율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적용상 혼란이 야기되고 보험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보험요율은 원수보험자가 산출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영문약관에 사용되는 요율은 해외 보험자에게 요율을 구득하고 있다. 국·영문요율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국문요율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요율의 해외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다. 국문요율의 국제화 시현

보험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위험의 차별화가 큰 공장건물에 대하여 적정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새로운 요율제도를 개발함으로써 현행 국문요율의 체질을 개선, 선진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요율자유화 조치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 3. 적용대상 및 할인율 산출

#### 가. 적용대상 물건

우량할인율이 적용되는 물건은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공장물건으로 한다.

##### (1) 보험가입금액

동일 구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이 기준일 (계약 만기 3개월 전일) 현재 20억원 이상인 물건.

여기에서 보험가입금액이란, 구내의 보험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고, 우량할인율을 신청한 보험회사와 체결한 1증권당의 보험가입 금액만을 말한다.

##### (2) 손해율

동일 구내의 과거 5년간 화재보험계약의 평균 손해율이 40% 미만인 것.

여기에서 손해율이란, 과거 5개년간 지급보험금 합계를 과거 5개년간 총수입보험료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기준일 현재의 유효한 계약은 제외한다.

##### (3) 경과년수

동일 구내의 화재보험가입 경과년수가 계속하여 만 5년 이상인 것.

그러나 보험가입 1년만 경과되어도 경년계수를 적용하여 할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기준일 현재의 유효한 계약은 제외한다.

#### 나. 할인율 산출

우량할인율은 최고 25%, 최저 2%로 한다.  
(단, 2%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은 25%의 특별할인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우량할인율은 10%를 초

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text{※ 할인율 산출공식: } K = 25 \times \frac{L+S}{2,500 \times r} (t)$$

- K : 우량할인율(%)

- 25 : 우량할인율, 최고한도(%)

- L : 손해 실적 득점

5년간의 손해율(%)과 손해발생회수(0회~3회 이상)에 따라 최저 150점에서 최고 1,000점까지의 점수를 득점함.

- S : 산출표 총득점

공장 구내의 화재위험상태를 현장조사결과에 의하여 연소위험, 소방시설 등 13개 항목을 평가하여 최고 1,500점까지의 점수를 득점함.

#### ※ 평가항목

##### - 일반공장

구내 연소위험, 위험물 사용, 전기시설, 구조비, 위험구획, 톱리스크, 경비상황, 공설소방차, 자동식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 - 석유화학공장

구외 연소위험, 위험물 사용, 전기시설, 톱리스크, 경비상황, 안전조직, 안전교육, 가연성가스(증기)누설검지대책, 공설소방차, 사설소방차, 옥외소화전, 경보설비, 금속검사

- r : 조정계수(0.8)

- t : 경년계수(1년 : 0.2, 2년 : 0.4, 3년 : 0.6, 4년 : 0.8, 5년 이상 : 1.0)

#### 다. 유효기간

우량할인율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책임이 개시되는 화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동 계약의 만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4. 할인율 적용절차

### 가. 현장조사

할인율 산출규정상 원수사 해당 계약물건(특수 물건 제외)은 원수사가 조사하고 특수건물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조사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 시 원수사는 해당 계약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협회에 조사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각사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우량물건 할인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현장조사기관으로 위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93년 9월 계약 물건부터는 전체 대상물건의 현장조사를 동 협회가 전담하게 되었다.

### 나. 확인신청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시행예정일(당해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일까지 확인 신청서, 우량할인율 산출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개발원에 확인 신청한다.

### 다. 개발원 확인 및 통보

확인신청 서류를 접수한 개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율 및 구내위험상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량할인율을 확인 후 즉시 해당사에 통보한다.

### 라. 시행

우량할인율을 실제 계약에 적용하여 1993. 5. 1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화재보험 계약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

## 태국의 공장에서 大火

1993년 5월 10일에 발생한 방콕 郊外의 케이다社 복다만손 장남감 공장화재로 인하여 공장 4개동중 3개동이 전소하였으며 사망자 269명, 부상자 469명이 발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미확정 상태이다.

발화공장은 4층건물로서 약 2,0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장은 내화구조가 아닌 철골조 지붕으로서 사고당시 대단히 빨리 과열되어

플라스틱과 같이 녹았으며, 피난구는 대부분이 폐쇄되어 있었고, 2개소만이 피난이 가능하여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 고 한다.

손해보험 대변인에 의하면 보험가입금액은 12억1700만밧(약360억원)이었다고 한다.

(Business Insurance 紙  
日本 三井海上 テーマ 情報紙)에서 발췌